

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994. 12

교 육 사 회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4. 12. 19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 출 일 자 : 1994년 12월 14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12월 14일

3. 제 안 이 유 :

- 정부의 인구증가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에 재 활용하기 위한 "피임약제기구보급사업"은 이제 인구 증가율이 1% 이하로 둔화 되었고,
-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는 시점으로서 보건사회부의 "IUD시술보급수수료 징수지침"이 폐지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4. 주 요 골 자

- 수수료 :
 - 먹는피임약(21정입 또는 28정입) 1싸이클 보급 → 230원
 - 콘돔(6개입) 1갑보급 → 200원
 - 자궁내장치 (루-프, IUD)보급 → 2,000원

○ 징수처리비의 교부

- 징수액의 30 / 100에 해당금액을 징수처리비로 시,군에 교부
- 징수금의 70 / 100에 해당금액은 대한가족계획협회충북지부에 보조함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에 재 활용.

단, 자궁내장치(IUD) 보급수수료 1건당 2,000원중 1,000원은 대한불임시술 협회에 납부하여 피임시술자 사후관리비로 사용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

- 정부의 인구증가억제 시책의 일환이 가족계획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임 약제기구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1% 이하로 둔화되었고
- 보사부에서 이제는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IUD시술보급 수수료 징수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: 별 첨